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5 - 46 - 209호

안 건 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지원금과 연계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등에 관한 건

피 심 인 커뮤니케이션
경기도 의정부시

의결연월일 2015. 9. 9.

주 문

1. 피심인은 (i)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ii)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조건변경 포함) 또는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시에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2,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시행 ('14.10.1.) 이후 다단계 영업을 통하여 LGU+ 가입자를 모집하는 피심인을 포함한 12개 다단계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i) 가입자 현황, (ii) 수당지급 현황, (iii) LGU+에서 받은 장려금과 요금수수료 현황, (iv) 구매시 적용되는 정책서, (v) 민원 등을 조사하였다.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의 제출자료와 현장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심인은 지원금 상한액(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15%)을 초과하여 1,184건에 대해서 평균 26,000원의 판매수당*을 제공하고, 326건에 대해서는 평균 154,000원의 페이백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에게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 본인이 가입한 단말기에 대하여 지급받은 수당

피심인은 다단계 영업을 통해 이용자의 지위에서 가입한 1,184명에게 이용약관과 별도로 판매수당을 제공하고, 특히 일부 이용자에게는 G프로2, G3 등 특정 단말기와 62요금제 이상의 고가요금제에 차별적으로 높은 판매수당을 제공하면서, LGU+의 차감정책과 연계하여 특정기간 이내에 서비스 해지나 요금제·기기 변경시 다단계 영업방식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에게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가입, 이용과 해지를 제한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단말기유통법은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에서 (i)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고 (ii)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개별계약 체결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i)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가입 건수 18,643건 중 1,184건에 대하여 평균 26,000원의 판매수당과 326건에 대하여 평균 154,000원의 페이백을 지급하는 등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ii) 이용자의 지위에서 가입한 1,184명에게 이용약관과 별도로 판매수당을 제공하고, 특히 일부 이용자에게는 G프로2, G3 등 특정단말기와 62요금제 이상의 고가요금제에 차별적으로 높은 판매수당을 제공하면서, LGU+의 차감정책과 연계하여 특정기간 이내에 서비스 해지나 요금제·기기 변경시 다단계 영업방식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에게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조건변경 포함) 또는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 및 제5조 제1항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된다.

3.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i)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ii)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조건변경 포함) 또는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 >

○○○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i)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ii)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조건변경 포함) 또는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5년 10월 00일

○○○ 대표자 ○○○

※ 사업장 공표문 크기 :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 온라인 공표문 크기 : 전체화면의 6분의1이상 크기의 팝업 창

다.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단말기유통법 시행령(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금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바.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계약해지를 거부·제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22조 제4항제2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심인의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인 점 등의 사유로 50%를 가중한다.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침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결론

상기 피침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최 성 준



부위원장

허 원 제



위 원

김 재 홍



위 원

이 기 주



위 원

고 삼 석

